

제227회 영등포구의회
2020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박미영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0. 12. 7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82호로 2020년 11월 12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적극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 조성 및 지원(안 제4조 ~ 제5조)

다.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 설치 운영(안 제6조)

라. 국제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 ~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나. 입법예고(2020. 11. 16. ~ 11. 20.) 결과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영등포구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국제기구 유치 등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,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음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규정으로 국제교류 협력 대상인 “국제기구 등”에는 국제연합기구 외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·연구소·비영리단체·협의회 등까지 포함하고 있음.
-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의 행정·재정적 지원 규정과 국제기구 등의 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- 이 같은 국제기구 유치는 해외자본 직접투자, 고소득 외국 소비 주체의 국내 유입 등 직·간접적 경제효과가 매우 크고 글로벌 수준의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- 그러나, 국제기구의 유치가 해당 도시의 글로벌화 지수 혹은 국제 선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지 계량화하기 어렵고,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직·간접의 효과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곤란함.

- 또한, 비용추계에 따르면 3년간의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예산이 107억 원에 달하여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수혜성 및 효과성을 감안할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.
-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국제교류협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며,
- 다만,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교류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구에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해야 하고, 국제기구 등의 유치 시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